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4.26(화) 17:30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4월 18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4월 19일

## 3. 제안 이유

- 우리도의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 중 '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가.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 위원 변경 및 기능강화(안 제12조)
- 위원장을 농정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직위격상
  - 수출 유관기관 공조 및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구성원 확대
- 나. 수출확대 방안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확대(안 제13조)
- 협의회 운영을 년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도

의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물 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에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